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공고

1. 국교조2025-72(2025.06.16.)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규약』 제21조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장 제6조에 따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제4대 임원선거 선거관리 위원장을 선출하여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 아 래 -

- 제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제4대 임원선거 선거관리 위원장 임명
- 이름: 이형철
- 소속: 경북대학교
- 기간: 2025년 6월 16일부터 2025년 8월 24일까지

붙임: 1.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총장

김영표

수석부위원장

최인철

위원장

남중웅

시행 국교조2025-78(2025.06.16.) 보존기간(3년) 010-4533-0189(위원장)

우(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아래나 K 204호/ TEL: 043-849-1512 / FAX: 043-841-5836

우(27410) 충북 충주시 사직산12길 20(문화동 2422번지) / TEL:043-848-0188 / FAX:043-847-0188

E-mail : uknup2019@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uknup.org>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1.07.21. 규정 제002호)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라 한다) 규약 제26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국교조 규약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규약 제13조의 대의원으로 한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 규약 제11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합 규약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선거일)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30~60일 전에 개최되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전임 부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선거종료 5일후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7조 (직무와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참관인 등록 관리
6.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장 선거사무

제1절 입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8조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①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0일전까지 하여야 하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5일전까지 실시한다.

② 선거공고문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선거 구분
2. 입후보자 등록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3. 투·개표 일시 및 장소

③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약력 및 공약서

제9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항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②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 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입후보 사퇴)

- ① 입후보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확정된 입후보자를 즉시 공고한다.

제2절 선거 운동

제12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하고,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규약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14조 (선거선전물 발행)

- ①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공고할 수 있다.
-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하에 후보자간의 추천을 통하여 정한다.

제15조 (합동연설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합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행하되 연설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절 투·개표

제16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규약 제13조의 대의원에 한하여 작성한다.
-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에 착오 및 누락 등이 발생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작성하여야 하며,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용지에 의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관리한다.

제18조 (투표 절차)

-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 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19조 (개표 관리)

-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 ②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각 후보의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③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등 모든 문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사무처에 이관한다.

제20조 (참관인)

- ①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참관인에 한하여 투·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 ② 각 후보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교체할 수 있다.

제21조 (당선자 결정 및 공고)

- ① 당선은 재적 대의원의 득표로 결정한다. 단, 단일 입후보시에는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수석부위원장은 당선된 부위원장 중에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4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22조 (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된 때.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제23조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이 사망,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②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선임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의 절차는 본 규정 선거절차를 준용한다.

제5절 이의신청

제24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야 하며,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4장 보 칙

제26조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선거관리규정에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중앙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제정 2021.07.21. 규정 제002호)

제1조 (준용) 본 조합과 관련된 기타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선거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